

퇴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 01 재산등록 및 공개
- 02 취업 제한
- 03 취업사실 신고
- 04 업무취급 제한
- 05 업무내역서 제출
- 06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01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산등록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2항
- 대상자
재산등록 의무자(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에서 퇴직한 사람
- 신고 내용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 사항
- 신고 기간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 같음
※ 등록대상 재산, 고지거부, 금융정보 제공 동의, 위반시 제재 등은 재직자 재산등록과 동일

◆ 재산공개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대상자
재산공개 대상자(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12호)에서 퇴직한 사람
- 공개 시기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02 취업 제한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대상자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Q 5급에서 4급으로 명예퇴직하였는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5급에서 명예퇴직하는 경우 인사발령상 퇴직직급은 4급으로 기재되나, 공무원 신분은 퇴직일 전날 24:00까지만 유지되고 그 때는 5급이므로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업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Q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여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었으나, 재산등록 기간인 2개월 이내 퇴직하여 재산등록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A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 발생 후 2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 재산등록(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취업심사대상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재산등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 면제일(퇴직일)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모두 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Q 재산등록 의무면제자로서 퇴직한 경우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지요?

A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의 의무면제자는 1차 의무면제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고 퇴직하였다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인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Q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가 미리 취업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에서 퇴직한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재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의 작성방법에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 등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로 볼 때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심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A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8호의4 서식(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과 별지제19호 서식(취업승인신청서)의 작성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의해 전역 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군인만 해당됩니다.

Q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 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비위면직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과 중복 적용됩니다.

● 제한 대상인 '취업'의 범위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을 받는 경우



Q 취업제한기관인 영리 사기업체의 비상임이사 위촉시에도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위나 직책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취업제한기관에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어도 취업심사 대상입니다.

● 제한 기간

퇴직일로부터 3년간

● 제한 기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구 분	기관 업무 기준	부서 업무 기준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이상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원(특정기관 1급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이하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직원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각호의 업무 - 재정지원,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계약·검사·검수, 법령상 감독, 사건수사·심리·심판,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 등에 관계된 업무 등 	

● 제한 기관

	구 분	기 준
영리 분야	영리 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협회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 가입

구 분		기 준
비영리 분야	시장형 공기업	기획재정부 지정 · 고시
	공직유관단체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수행
	사립대학 등	사립대학과 그 설립 학교법인
	종합병원 등	종합병원과 그 설립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 취업제한기관 : 매년 12월말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협회’는 '19. 6월부터 고시 예정)

● 취업제한기관 조회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법령 · 통계 정보 → 훈령/예규/고시 → 취업제한기관 고시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 검색창에 “취업제한” 입력



Q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은 해당 기업에는 아예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A 아닙니다. 취업심사 대상인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고,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3급 이하 공무원 등 적용) 또는 기관(2급 이상 공무원 등 적용)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설명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이라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Q 사립대학도 취업대상기관에 해당되는데 순수학문 연구를 위해 평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사립대학의 교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직위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민간유착 가능성이 우려되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등의 직위(소위 보직교수)에 있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순수 학문적 전문성을 살려 대학의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취업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 심사 없이 취업하였으나, 1년 경과 후 취업제한 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취업심사는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당시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 심사없이 취업한 경우, 해당 취업업체가 향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더라도 별도로 취업 심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한 업체가 연도 중 회사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사업분야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이 되거나 합병된 경우 취업제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A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자본금, 외형거래액)를 충족하고 있다면 취업제한대상에 해당됩니다.

● 취업심사 종류

※ 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 승인' 신청 중 택일하여 요청(신청)

구분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 승인
개 념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조사 · 판단하여 취업가능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보조 제공 •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등에 관계 • 생산방식 · 규격 · 경리 등에 대한 검사 · 감사 관련 • 조세의 조사 · 부과 · 징수에 관계 • 공사 · 용역 · 물품구입의 계약 · 검사 · 검수 관련 • 법령에 근거한 직접 감독 • 취업제한기관에 관계되는 사건의 수사 · 심리 · 심판과 관계 등 •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 · 대외경쟁력 강화 · 공공 이익상 필요 • 직제 · 정원의 개정 · 폐지, 직위 폐지 · 정원 초과로 인한 면직 • 국가 · 지자체 출자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상 필요 • 기술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산업 분야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 • 일정기간 전문지식 · 기술 필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 종사분야에 재취업 등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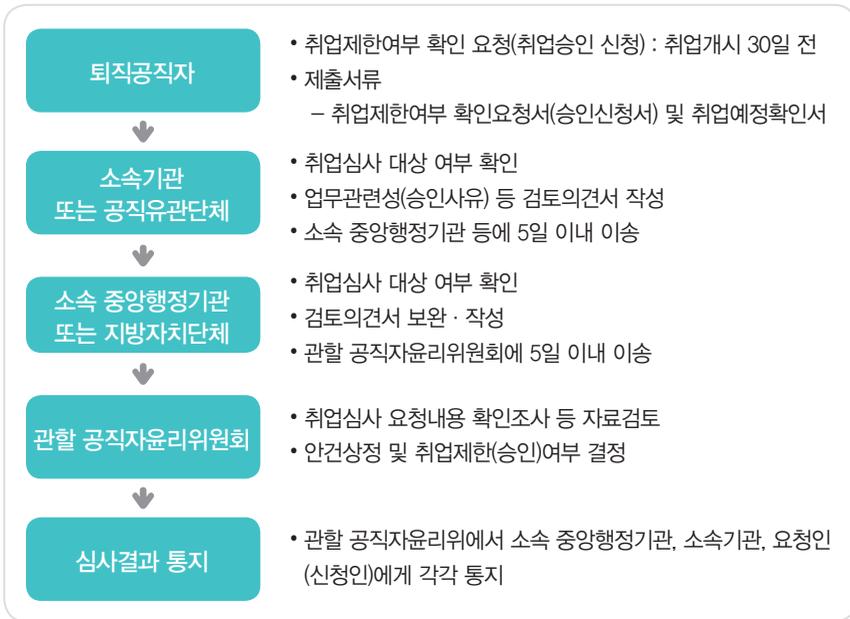
Q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신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또는 취업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취업예정업체(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 관련 절차



우선취업 제도

- (관련 조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4
- (내용) 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고 취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먼저 취업을 하게 한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심사는 추후에 실시
- (사유) i)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ii)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iii) 기타 우선취업이 필요한 경우
- (신청)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 서식의 신청서 기재,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
 - ※ 대상자가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가능
- (승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전 우선취업 승인 가능

여기서 잠깐!!

- ◆ (임의취업)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 없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임의취업) 했는지 여부를 연 2회 확인 ⇒ 적발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 ◆ (심사시기)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관할 윤리위 판단을 받아야 함



【취업제한 관련 의무 위반시 제재 및 주요 사례】

■ 공직자윤리법상 위반내용별 제재

위반 내용	제재
•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법 제29조제1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법 제30조제3항제2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요 사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의 임의취업

- 1) 前 ○○○부 ○○○서기관은 취업제한기관인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인 ○○○협회에 취업하면서 사전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임의취업
 - ▶ 취업제한여부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및 취업해제 조치” / 사전 취업심사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 2) 前 공직유관단체 ○○○원장은 취업제한기관인 (주)○○○에 사외이사로 취업하면서 사전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임의취업
 - ▶ 취업제한여부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및 취업해제 조치” / 사전 취업심사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 업무관련성이 낮은 취업제한기관에의 임의취업

- 1) 前 공직유관단체 대표 ○○○은 취업제한기관인 ○○○○에 비상임 고문으로 취업 하면서 사전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임의취업
 - ▶ 취업제한여부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가능” / 사전 취업심사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 2) 前 공직유관단체 임원 ○○○은 취업제한기관인 (주)○○○에 감사실장으로 취업 하면서 사전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임의취업
 - ▶ 취업제한여부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가능” / 사전 취업심사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03 취업사실 신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
- 대상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 등
- 신고 대상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
- 신고 시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방법
 - 취업사실 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제출
 - * 대상자 인적사항, 퇴직일·퇴직 당시 소속기관명·직위,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직위·
취업일·취업경로 등 기재
 -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신고 가능

취업이력 공시 제도

- ✓ (목적)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간) 이후의 재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 유도
- ✓ (내용)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인터넷에 공시
-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 ✓ (대상)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 (방법)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공시
- ✓ (항목)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과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등



Q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0년간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동 기간 동안 취업이력이 공시됩니다. 그 대상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 하였던 기관의 업무인 고위공직자와 동일합니다. 즉, 재산공개 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원 등이 취업사실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취업사실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제5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요 사례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사실 미신고

1.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은 취업제한기관인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부회장으로 취업한 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
2.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 퇴직한 ○○○은 취업제한기관인 사기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한 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
 - ▶ 취업사실 신고 위반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 결정



04 업무취급 제한

모든 퇴직공직자는 재직 시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 중에서 일정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으며,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해당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 업무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 처리업무 취급 제한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 대상자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제한대상 업무
재직할 전체 기간에 직접 처리하였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한 대상 일정 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

- ✓ 직·간접의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등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 ✓ 인 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 제한기간
영구(기간 제한 없음)



Q 모든 공직자가 재직할 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전부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A 재직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취급금지의 대상이고,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만 해당됩니다.

Q '본인 처리업무 취급 제한'은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와 취업심사가 필요 없는 곳에 취업한 경우 모두 적용되는 건가요?

A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의한 본인 처리업무 취급 제한은 취업제한기관에 한정되지 않으며,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라면 취업제한기관인지 여부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해당 업무의 취급이 금지됩니다.

Q 어떤 경우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의 적용을 받아 업무취급이 금지되는 것인지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A 예를 들어, 재직 중 A업체에 하천 골재채취 허가를 하고 퇴직 후 A업체에 취업하여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재직 중 직접 처리내역과 취업 후 취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관 처리업무 취급 제한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 대상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 등

● 제한대상 업무

해당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제한기간

퇴직 후 2년간



Q ○○청의 소속기관장(예, △△지방청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기관 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처리한 업무 이외에 상급 중앙행정기관이 처리한 업무의 취업도 금지되는지요?

A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해당자가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므로, 해당자가 퇴직할 때까지 △△지방청에만 2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하급기관 포함)이 해당자가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 2년간 취급이 제한됩니다.

● 업무취급 승인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 대상자

업무취급 제한을 받는 퇴직공직자

● 승인사유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 취급이 필요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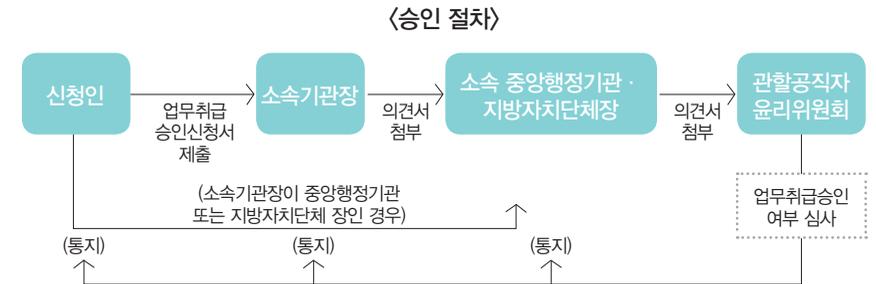
✓ 업무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 두 가지 사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승인신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 및 취업예정 확인서*(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출

* 취업한 상태라면 취업사실 증빙서류



Q 업무취급 승인 신청은 취업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이지요?

A 업무취급 승인은 취업한 후 제한업무의 취급이 필요한 때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면 되므로, 취업심사처럼 취업 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취급 승인을 취업심사와 함께 받게 되면 취업 후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업무취급 제한 위반(제재 : 과태료 또는 벌금·징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 제한 관련 의무 위반시 제재 및 주요 사례】

■ 공직자윤리법상 위반내용별 제재

위반 내용	제재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후 취업한 경우(법 제29조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취업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요 사례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후 취업한 경우

광역시자치단체 前 공무원 ○○○은 재직 중 본인이 총괄·처리했던 계약 등 업무가 종결되기도 않은 상태에서, 취업제한기관은 아니지만 해당 업무와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자문역 간부로 취업한 후, 해당 업무를 취업한 사실이 확인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1항 업무취급제한 위반에 해당 한다”라고 결정하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업무취급 위반” 고발

기초자치단체 前 국장급 공무원 ○○○은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본인이 재직 중 총괄·관리하던 사업이 종결되기도 않은 상태에서 취업제한기관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리회사에 취업한 후 해당 업무를 취업하였다”는 의혹을 받음

▶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였고, 관할 공운위와 지자체 감사부서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으며, 해당 퇴직공무원은 자진 퇴사하였음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취업한 경우

중앙부처 前 고위공무원 ○○○은 취업제한기관인 ○○○○에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개월간 기관운영을 총괄하면서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정보조 및 감독·감사 업무(제17조제2항 제1호, 제6호)를 업무취급승인을 받지 않은 채 취업한 사실이 확인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 위반으로 제30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 된다”라고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취급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사례

중앙부처 前 고위공무원 ○○○은 취업제한기관인 ○○○○에 상근부회장으로 취임 후 부기관장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업무위탁·협약 업무, 용역 계약 업무, 감독·감사 업무 등에 대하여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을 신청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의 공공성은 일부 인정되나, 신청인의 직접 취업 필요성이 크지 않고 업무취급의 시급성 및 공익 관련성이 크지 않으며 퇴직 전 소속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업무의 취업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업무취급 불승인” 통지



05 업무내역서 제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 대상자
법 제18조의2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제출시기
퇴직 후 2년간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 제출처
퇴직 전 소속기관장
- 업무내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 서식) 기재사항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관여한 업무처리 등 월별 활동내역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 등을 포함
 - 퇴직 전 소속기관과 문서수발내역 등 증명서류 및 세부설명자료 등 첨부
- 관련 절차



- Q**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취업제한기관 이외의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기관 처리업무 취급 제한 대상인지?
- A**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만 법 제18조의2제2항에 의한 기관 처리업무 취급 제한을 받고, 이 경우에 한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Q**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 작성 시 퇴직 후 2년 동안 2개 이상의 취업제한기관에서 근무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퇴직 후 2년간 소속기관의 일정 업무 취급제한이 목적이므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매 1년이 지난 1개월 이내 취업한 모든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업무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위반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30조제3항제3호)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부과(병과 가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요 사례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을 받고 공공기관장으로 취임한 후, 취업기관에서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

중앙부처 前 고위공무원 ○○○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에서 재취업한 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취급제한업무(제17조제2항 제3호, 제6호)를 업무취급승인을 받지 않고 본인이 처리한 사실이 업무내역서 심사과정에서 확인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위반으로 결정하고,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



06 부정한 청탁 · 알선 행위 금지

모든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근거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1항
- 대상자
퇴직한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금지 행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참고) 「청탁금지법」(국민권익위)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제5조제1항)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됨

- ✓ 인가·허가·면허·승인·검사 등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공공기관 주관의 수상, 포상, 우수자 전발 등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입찰·경매·개발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등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보조금·장려금·기금 등을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등

【부정 청탁 · 알선 행위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3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 서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재산등록 관련

서식번호	서 식 명
별지 제1호서식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재산변동 요약서
별지 제3호의2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별지 제3호의3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서
별지 제3호의5서식	주식변동사항 신고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재산등록 보완신고서
별지 제5호의4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신청서

■ 주식백지신탁 관련

서식번호	서 식 명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
별지 제14호의5서식	주식(매각 ·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 · 운용 중인 주식)
별지 제14호의8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별지 제14호의15서식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별지 제14호의17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별지 제14호의18서식	직위변경 신청서

직급별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 선물신고 관련

서식번호	서 식 명
별지 제16호서식	선물수령 신고서

■ 취업제한 관련

서식번호	서 식 명
별지 제18호의3서식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취업 예정 확인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우선취업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승인신청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취업사실 신고서

■ 업무취급제한 관련

서식번호	서 식 명
별지 제20호의2서식	업무취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20호의4서식	업무내역서

■ 부정청탁·알선 신고 관련

서식번호	서 식 명
별지 제20호의6서식	청탁·알선행위 신고서

■ 재직자

대상자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알선시 신고(30p)
2~4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상근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재산 등록(8p) •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알선시 신고(30p) • 취업제한기관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금지(32p)
경찰·소방·감사·조세· 건축·회계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원자력발전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재산 등록(8p) •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알선시 신고(30p) • 취업제한기관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금지(32p)
기획재정부 금융 사무국 및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재산 등록(8p) •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매각·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21p) •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알선시 신고(30p) • 취업제한기관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금지(32p)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 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재산 등록 및 재산등록사항 공개(8p) ※ 변동신고시 대상 기간 중 주식 거래가 있었을 경우 주식거래 내역 신고 •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매각·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21p) •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알선시 신고(30p) • 취업제한기관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금지(32p)

■ 퇴직자

대상자(퇴직 전 직급)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영구히 취급 불가(48p)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57p)
3~4급 공무원, 경찰·소방·감사·조세·건축·회계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및 원자력발전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36p) •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의 취업 제한(37p) •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영구히 취급 불가(48p)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57p)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및 원자력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1급 이상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36p) •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의 취업 제한(37p) •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45p) •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영구히 취급 불가(48p) •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 업무 취급 불가(49p) •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시 퇴직 후 2년간 업무내역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54p)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57p)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 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 및 재산신고사항 공개(36p) •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제한(37p) •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45p) •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영구히 취급 불가(48p) •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 업무 취급 불가(49p) •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시 퇴직 후 2년간 업무내역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54p)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57p)

☎ 인사혁신처 공직윤리 업무관련 전화번호

분 야	부 서	전화번호
재산등록·공개	재산심사과	044-201-8482
주식백지신탁	윤리정책과	044-201-8456
선물신고	윤리정책과	044-201-8457
취업제한	취업심사과	044-201-8475
업무취급 제한	취업심사과	044-201-8480
부정청탁·알선 금지	취업심사과	044-201-8480

📄 관련 사이트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신고 및 공직윤리제도 관련 자료·서식 게재 등 서비스데스크 1522-4273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직윤리제도 소개, 공직유관단체 및 취업제한기관 지정현황 게재 등